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

제출년월일 : 2026. 10. 2.
제 출 자 : 송 파 구 청 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에 근거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도서 재활용 방안'을 명시하고, 박물관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박물관 장서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박물관운영위원회 자문규정 정비(안 제15조)

- 장서의 제적·폐기시 운영위원회 자문

다. 박물관 장서의 제적·폐기 규정 정비(안 제43조)

- 제적·폐기 도서의 기관·단체 대상 무상배부 등 도서 재활용 방안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3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기획예산과(규제사전심사),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보육과(성별영향평가)

라. 기 타

1) 개정문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별첨
2) 입법예고: 2026. 9. 9. ~ 9. 29. (20일간)
3) 심사대상 규제사무: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서”란 박물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일반도서(국내외 일반 및 아동서),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시청각자료, 전자자료(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 기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말한다. 다만, 학예사가 수집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자료는 제외한다.

제15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박물관 장서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46조 앞의 “제8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장서의 관리”로 하고, 제7장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고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송파책박물관 장서관리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 단체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4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장서”란 박물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일반도서(국내외 일반 및 아동서),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시청각자료, 전자자료(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 기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말한다. 다만, 학예사가 수집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자료는 제외한다.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 6. (생 략)	제15조(위원회 기능) ---------- ---------- 1. ~ 4. (현행과 같음) 5. 박물관 장서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7장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신 설>	제7장 장서의 관리 제4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고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송파책박물관 장서관리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 단체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 설>	제8장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43조 ~ 제45조 (생 략)	제44조 ~ 제46조 (현행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와 같음)
제8장 보 칙	<삭 제>
<신 설>	제9장 보 칙
제46조 · 제47조 (생 략)	제47조 · 제48조 (현행 제46조 및 제47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7**〕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ㅏ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차. (생략)

5.~6. (생략)

③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없음

나. 수입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작성자**: 학예연구팀장 행정6급 박선영
- **검토자**: 학예연구팀장 행정6급 박선영
- **결재자**: 송파책박물관장 행정5급 김선희